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36 폭행
피 고 인 허성무 (500000-00000000), 농0
주거 진00 0000 000-00(000)
등록기준지 경0 000 000 000 000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00(기소), 김00(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00(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고정35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거나 정

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훈 _____

 판사 장시원 _____

 판사 김나영 _____